

지방세·세외수입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약관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약관	지방세·세외수입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약관	-약관명 변경
<p>제 1 조(목적)</p> <p>본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"<u>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</u>"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"은행"과 "이용자"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	<p>제 1 조(목적)</p> <p>본 약관은 (주)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"<u>지방세·세외수입 전자송달 서비스</u>"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"은행"과 "이용자"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	-세외수입 추가
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"서비스"는 "이용자"가 "KEB 하나은행 - 스마트폰 뱅킹(이하 "<u>서비스 앱</u>")을 통해 "<u>지방세 고지서</u>"를 수신·열람하거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<u>말합니다.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3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p> <p>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1. "서비스"는 "이용자"가 은행의 "<u>인터넷지로 모바일 앱</u>"을 통해 <u>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를 수신·열람하고, 지방세·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</u> 말합니다.</p> <p>2. (좌 등)</p> <p>3. "<u>인터넷지로 모바일 앱</u>" 이란 "이용자"가 스마트폰에서 <u>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를 "하나알리미"에서 수신·열람하고 "하나원큐"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</u> 말합니다.</p> <p>4. (좌 등)</p> <p>5. "<u>세외수입</u>" 이란 「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의 1 및 동조</p>	-세외수입 추가 -앱명칭 생략 -용어정의 추가 -호 체하 -용어정의 추가

<p>4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 2 조의 1 의 2 에 의한 지방세외수입금, 과태료, 사용료, 재산임대수입 등을 말합니다.</p> <p>6. (좌동)</p> <p>7. "지방자치단체"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말합니다</p> <p>8. "관계법령"이란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회계법」, 「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을 말합니다.</p> <p>9. "위택스"란 행정안정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방세·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.</p> <p>② (좌동)</p>	<p>-호 체하</p> <p>-용어정의 추가</p> <p>-용어정의 추가</p> <p>-용어정의 추가</p>
<p>제 3 조 (이용계약의 성립)</p> <p>① 이용계약은 "서비스"의 "이용자"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한다)가 스스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, 은행의 인증절차와 <u>외부인증</u>을 거친 후 "이용자" 가입을 신청하고, "은행"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~5.(생략)</p> <p>6."가입신청자"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<u>관련 법령</u> 및 기타 "은행"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</p>	<p>제 3 조 (이용계약의 성립)</p> <p>① 이용계약은 "서비스"의 "이용자"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(이하 "가입신청자"라 한다)가 스스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, 은행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"이용자" 가입을 신청하고, "은행"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.</p> <p>② (좌동)</p> <p>1.~5.(좌동)</p> <p>6."가입신청자"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<u>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</u> 및 기타 "은행"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</p> <p>7.(좌동)</p>	<p>-외부인증절차 생략</p> <p>-관련법령 구체화</p>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“이용자” 가입 신청시 위택스 전자고지함, 전자우편주소, 또는 타 금융기관 앱을 통해 제공되던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는 자동 해지 됩니다.</p>	<p>③ 제 2 항에 따라 “이용자”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“은행”은 원칙적으로 이를 “가입신청자”에게 알리도록 합니다.</p> <p>④ (좌 동)</p> <p>⑤ 회원 가입 신청 시 타 기관의 앱을 통해 제공되던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 서비스는 자동 해지됩니다. 다만, 위택스 전자사서함 및 전자우편주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.</p>	<p>-가입신청자 알림 추가</p> <p>-호 체하</p> <p>- 세외수입 추가 및 위택스 기본송달 반영</p>
<p>제 4 조 (서비스의 이용 개시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“지방세” 납부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 <p>⑤ “서비스” 신청시, 다음달 1 일 이후 부과된 지방세 고지서부터 수신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 4 조 (서비스의 이용 개시)</p> <p>① (좌 동)</p> <p>1. ~ 2. (좌 동)</p> <p>3. “지방세·세외수입” 납부</p> <p>4. (좌 동)</p> <p>② ~ ④ (좌 동)</p> <p>⑤ “서비스” 신청시, 신청일의 익월부터 부과되는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가 전자송달되며,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⑥ 전자송달 대상 지방세·세외수입 세목 종류 및 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	<p>-세외수입 추가</p> <p>-전자송달에 따른 종이고지서 안내</p> <p>-전자송달 대상 관련 안내 조항 신설</p>
<p>제 5 조 (서비스의 일시 중단)</p> <p>① (생 략)</p>	<p>제 5 조 (서비스의 일시 중단)</p> <p>① (좌 동)</p>	

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"은행"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<u>정당한 사유</u>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② (생략)</p>	<p>1. ~ 2. (좌동)</p> <p>3. 기타 "은행"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<u>위 1 호 및 2 호에 상당하는</u>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② (좌동)</p>	<p>-단어 변경</p>
<p>제 6 조 (서비스 해지)</p> <p>① "이용자"는 "서비스 앱"을 통해 "서비스"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인터넷뱅킹(스마트폰뱅킹 포함) 해지시 서비스는 자동 해지 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>제 6 조 (서비스 해지)</p> <p>① "이용자"는 "인터넷지로 모바일 앱"을 통해 "서비스"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창구,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(삭제)</p> <p>② 서비스 해지 신청일 당월에 부과되는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는 전자송달되며, 익월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는 종이고지서로 발송됩니다.</p> <p>③ 위택스를 제외한 타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"인터넷지로 모바일 앱"을 통한 서비스 이용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.</p>	<p>-해지 방법 추가</p> <p>-전산반영</p> <p>-해지 신청 적용일 안내 조항 신설</p> <p>- 자동해지 안내 조항 신설</p>
<p>제 7 조 (스마트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)</p> <p>① "스마트폰"을 변경 한 경우 이용자는 "서비스 앱"을 재설치 후 <u>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② "이용자"는 "은행"에 이미 신고한 성명, 이메일, 전화번호, 주소 등 사용자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<u>즉시 정보를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,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"은행"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	<p>제 7 조 (스마트폰의 변경 및 신고사항의 변경)</p> <p>① "스마트폰"을 변경 한 경우 이용자는 "인터넷지로 모바일 앱"을 재설치 후 "은행"이 정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.</p> <p>② "이용자"는 "은행"에 이미 신고한 성명, 이메일, 전화번호, 주소 등 사용자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<u>즉시 정보를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용어의 정의 반영, 구체화</p> <p>-문장 변경</p>

<p>제 8 조 (지방세 고지서 수신)</p> <p>① “은행”은 “지방세 고지서”를 “이용자”가 인증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된 “서비스 앱”으로 “은행” 또는 “자치단체”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전송합니다.</p> <p>② “은행”은 “이용자”에게 “서비스 앱”으로 “지방세 고지서” 등이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(Push Message)을 “이용자”가 Push 메시지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전송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제 1 항과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“이용자”가 전송된 “지방세 고지서”를 “서비스 앱”을 통해 수신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“은행”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</p> <p>④ “은행”은 “자치단체”가 “이용자”에게 전송하는 “지방세 고지서” 및 “고지내역”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, “자치단체”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“지방세 고지서” 및 “고지내역”은 고지서상의 납기후 기간이 경과하면 “은행” 내의 “서비스” 운영시스템에서 삭제 합니다.</p> <p>⑤ “이용자”는 수신된 “지방세 고지서”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“서비스 앱” 내에 고지된 “자치단체”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. 단, “은행”이 개발한 “서비스 앱”에 대한 문의는 “은행”에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⑥ “은행”은 “지방세 고지서” 내용에 대해서나, “자치단체”의 사정으로 “지방세 고지서”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응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	<p>제 8 조 (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 수신)</p> <p>① “은행”은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를 “이용자”가 인증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된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으로 “은행” 또는 “자치단체”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전송합니다.</p> <p>② “은행”은 “이용자”에게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으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 등이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(Push Message)을 “이용자”가 Push 메시지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전송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③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전송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를 “이용자”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통해 수신·열람하여야 하며, 해당 앱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.</p> <p>④ “은행”은 “자치단체”가 “이용자”에게 전송하는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 및 “고지내역”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, “자치단체”의 별도 요구사항이 없는 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 및 “고지내역”은 고지서상의 납기후 기간이 경과하면 “은행” 내의 “서비스” 운영시스템에서 삭제 합니다.</p> <p>⑤ “이용자”는 수신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 내에 고지된 “자치단체”에게 직접 문의하여야 하며, “은행”이 운영하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에 대해서는 “은행”에서 안내합니다.</p> <p>⑥ <삭 제></p>	<p>-세외수입 추가 -명칭 변경</p> <p>-이용자 의무 반영 -</p> <p>-세외수입 추가 -세외수입 추가 -명칭변경</p> <p>-⑤와 통합/</p>
--	--	--

⑦ (생략)	⑥ (좌 등)	-호 체상
<p>제 9 조(지방세 납부)</p> <p>① “이용자”는 “서비스 앱”을 통해서 수신한 “지방세 고지서”의 금액을 “서비스 앱”에서 본인의 기 등록된 출금계좌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“이용자”는 “서비스 앱”을 통해서 납부된 지방세를 취소할 수 없으며,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환급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 9 조(지방세·세외수입 납부)</p> <p>① “이용자”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통해서 수신한 “지방세·세외수입 고지서”의 금액을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에서 본인의 기 등록된 출금계좌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“이용자”는 “인터넷지로 모바일 앱”을 통해서 납부된 지방세·세외수입 를 취소할 수 없으며,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환급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</p> <p>③ (좌 등)</p>	<p>-세외수입 추가 용어의 정의 반영</p> <p>-세외수입 추가 용어정의 반영</p>
<p>제 10 조 (은행의 의무) (신 설)</p>	<p>제 10 조 (은행의 의무)</p> <p>① “은행”은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“서비스”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“은행”은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며, “은행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“이용자”의 개인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 등으로 야기된 “이용자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.</p> <p>③ “은행”은 “이용자” 인증강화를 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 스마트폰 식별을 위한 정보 (스마트폰 모델명, UUID 등)를 수집하여 활용하며, 동 정보는 로그인 등 “이용자” 인증정 보로만 사용합니다.</p> <p>④ “은행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“이용자”의 정보를</p>	<p>-은행의 의무 신설</p> <p>-법령 구체화</p>

	<p>관리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"은행"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"이용자"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</p>	
<p>제 11 조(이용자의 의무) (신 설)</p>	<p>제 11 조(이용자의 의무)</p> <p>① "이용자"는 본 "서비스"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,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. "계좌번호", 등록 스마트폰 등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·누설,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3."서비스"를 이용하여 얻은 "은행"의 정보를 "은행"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 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. "은행"이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. "서비스"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, 연결(링크)하는 행위 6.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<p>② "이용자"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"은행"에 통보하여 서비스를 해제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③ "이용자"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"서비스"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"은행"이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</p>	<p>-이용자의 의무 신설</p> <p>-법령 구체화</p>

	기타 "은행"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됩니다.	
제 10 조 (개인정보의 제공, 위탁) "은행"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"이용자"의 동의를 받아 "이용자"의 개인정보를 " <u>자치단체</u> "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	12 조 (개인정보의 제공, 위탁) "은행"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"이용자"의 동의를 받아 "이용자"의 개인정보를 " <u>지방자치단체</u> "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	-호 체하 -용어 변경
제 11 조 (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) (생 략)	13 조 (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) (좌 등)	-호 체하
제 12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 손해배상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<u>손해배상 및 면책</u> 변경 부분을 따릅니다.	제 14 조 (손해배상 및 면책) 손해배상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" <u>손해배상 및 면책</u> " 변경 부분을 따릅니다.	-호 체하 -용어 구체화
제 13 조 (약관의 변경)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<u>약관의 변경</u> 부분을 따릅니다.	제 15 조 (약관의 변경)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" <u>약관의 변경</u> " 부분을 따릅니다.	-호 체하 -용어 구체화
제 14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① (생 략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<u>전자금융법</u> ,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,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	제 16 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위) ① (좌 등)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터넷지로 이용약관, <u>관계법령</u>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	-호 체하 -용어정의 반영
제 15 조 (관할법원) (생 략)	제 17 조 (관할법원) (좌 등).	-호 체하